

요약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보험산업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Capital Efficiency)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하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이 있었는데, 솔벤시II 대응, 잔존계약의 처리, 운영효율성 및 자본효율성 제고 등이 계약이전의 주요 동기였음
- 영국에 비해 미국은 계약이전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는데, 2018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그리고 2021년 아칸소 주에서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음
 -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포괄이전제도(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은 분리해서 계약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3년에 폐지했음
 - 2000년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른 산업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보험산업은 포괄이전제도로 인해 한계가 존재했음
- 주요국 사례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계약이전제도의 경우에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포괄이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1. 검토배경

- 지난 20년 동안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고 있음¹⁾
 -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보험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7.2%(2002~2011년)에서 0.7%(2015~2020년)로 감소하였고, 연평균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 이하, “ROA”라 함)은 0.9%(2002~2012년)에서 0.4%(2015~2020년)로 하락하였음²⁾
 - 한편, 손해보험산업은 원수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이 12.7%(2002~2011년)에서 5.0%(2015~2020년)로 감소하였고, 연평균 ROA는 2.0%(2002~2012년)에서 1.1%(2015~2020년)로 하락하였음
- 하락하고 있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Capital Efficiency)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국(영국,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업구조개편은 구조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적(事前的) 구조개편과 사후적(事後的) 구조개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전적 구조개편은 부실화 이전의 구조개편으로 선제적 구조개편 또는 상시적 구조개편이라고도 함
 - 기업은 신용위험평가에 의해 A, B, C, D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C와 D 등급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되며, 이들 기업의 구조개편은 사후적 구조개편에 해당됨³⁾
 - A와 B 등급 기업의 구조개편은 사전적 또는 선제적 구조개편에 해당됨
 - 과거에는 사후적 구조개편이 주를 이루었으나, 경쟁력 강화 목적의 사전적·선제적 구조개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전적 사업구조개편의 여러 수단 가운데 계약이전과 기업분할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계약이전은 보유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분할은 하나의 기업이 두 개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함

1) 임준(2021), 「보험산업 인적자원 고도화 방향」, 『KiRi리포트』, 제534호, 보험연구원

2) 보험산업 회계연도 변경이 있었던 2013년을 기준으로 전후기간의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했음

3) 구정현(2021), 「외부충격·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성과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30권 10호, 한국금융연구원



2. 국내현황

- 보험산업의 계약이전 관련 규제는 보험업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음
 -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은 보험회사의 부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전적 구조조정제도에 해당되는 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계약이전은 부실금융기관 정리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후적 구조조정제도에 해당됨
- 우선, 보험업법의 계약이전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⁴⁾,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를 포괄하여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음⁵⁾
 -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음⁶⁾
 - 첫째, 보험계약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둘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 대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셋째, 이익을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함
- 두 번째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는 계약이전 명령과 계약이전 결정이 규정되어 있음
 - 먼저, 계약이전 명령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음⁷⁾
 - 보험회사가 계약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범위 및 조건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함⁸⁾
- 한편, 기업분할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반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는 분할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가 분할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승인이 필요하며⁹⁾, 일정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¹⁰⁾

4) 보험업법 제139조

5) 보험업법 제140조

6) 보험업법 제141조

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

8)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9) 은행법 제55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7조

10)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 9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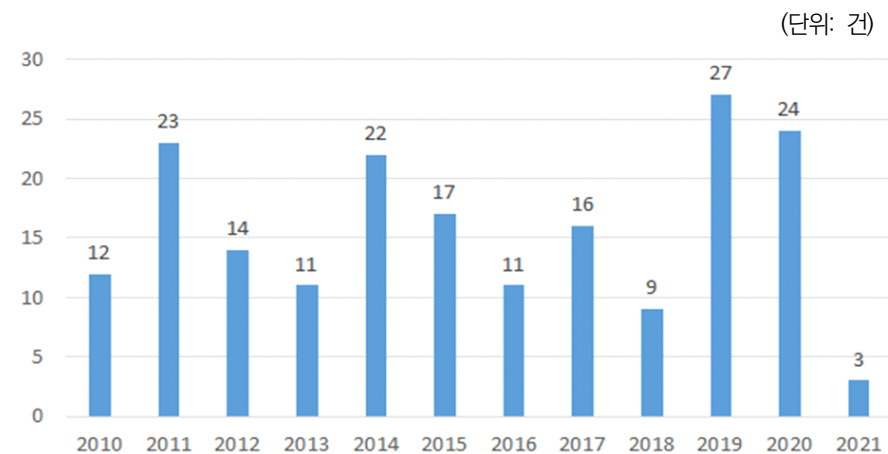


3. 해외사례

○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구조개편 수단으로 계약이전제도(Insurance Business Transfer Scheme)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¹¹⁾

-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이하, “FSMA”이라 함)의 Part VII에 계약이전제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영국의 계약이전제도를 ‘Part VII Transfe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이 있었으며¹²⁾,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189건의 계약이전이 있었음¹³⁾

〈그림 1〉 연도별 Part VII 계약이전 건수



자료: Shah et al.(2021)

○ 계약이전의 동기는 솔벤시II가 도입된 2016년을 전후로 하여 차이를 보이는데, 2016년 이전에는 솔벤시II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이전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6년 이후에는 브렉시트(Brexit)가 주요 동기였음¹⁴⁾

- 2016년 이후의 계약이전 90건 가운데, 약 40%에 해당되는 38건이 브렉시트로 인한 계약이전이었으며, 이외에 23

11) 영국의 이전제도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계약이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임. FSMA에는 ‘Business’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국 과세관청의 Part VII Transfer에 관한 회계처리 매뉴얼의 내용에 근거할 때, 계약이전뿐만 아니라 영업양수, 합병 등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계약이전보다는 사업이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나 여러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의 경우에도 계약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

12) Restructuring Mechanisms Working Group(2021), *Restructuring Mechanisms: An NAIC White Paper*,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13) 영국사례는 다음 자료를 참고했음: Jinit Shah, Simon Sheaf and Simon Perry(2021), “The Transfer Window: Part VII Transfers Today”, *The Actuary*,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14)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보험회사는 더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하, “EEA”이라 함)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EEA 관련 사업은 EEA 지역의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했음

건은 잔존계약(Run-off)의 처리를 위해, 그리고 21건은 운영효율성이나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구조조정 목적의 계약이전이었음

- 잔존계약 관련 계약이전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석면, 환경, 건강 관련 배상책임(Asbestos, Pollution, Health(APH) Hazard Liabilities)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같은 다른 손해보험과 연금 등의 생명보험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영국의 계약이전제도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하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다른 구조조정 수단인 재보험이나 경개(Novation)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첫째, 재보험의 경우에는 재보사가 파산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원수사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여전히 원수사에 남아 있으나,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을 이전받는 회사에게 법적 책임을 완전히 넘길 수 있음
- 둘째, 경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에 의해 채무자를 변경하는 계약법상의 채무 소멸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보험의 경우처럼 채권자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계약이전 절차는 법원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데, 이전하는 보험회사와 이전받는 보험회사 이외에 규제당국인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제3의 전문가(Independent Expert), 보험계약자 등이 관련자로 참여하게 됨

- 계약이전 착수 단계에서는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제3의 전문가를 지정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적절성 여부를 규제당국이 판단함
- 제3의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는 법원, 규제당국,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며, 법원 공청회(Court Hearing)를 개최하여 규제당국자와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영국에 비해 미국은 계약이전제도의¹⁵⁾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는데, 2018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그리고 2021년 아칸소 주에서 도입했음¹⁶⁾

- 로드아일랜드 주와 버몬트 주에서도 계약이전제도를 도입했는데, 적용대상이나 보험계약자 동의 등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Part VII 형태의 계약이전은 아니었음
 - 로드아일랜드 주의 경우에는 기업성 보험이면서 적어도 5년 이상 런오프 상태에 있는 계약의 경우에만 계약이전이 가능했음¹⁷⁾
 - 버몬트 주의 경우에는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Opt-out)을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했음
- 뉴욕,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텍사스 등과 같은 보험회사가 많은 주들은 아직 계약이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15) 미국의 경우에도 영국 제도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계약이전'이라는 표현 대신 '사업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나 영국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에서 계약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

16) 미국사례는 다음 자료를 참고했음; Andrew Rothseid(2021), "Acceleration of IBT Approvals will Transform US Legacy Market", *Insurance Day*, Informa

17) 영국 Part VII의 경우에는 판매 중단한 런오프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 중인 상품, 그리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계약이전이 가능함

○ 미국의 계약이전 사례는 현재까지 두 건이 있으며, 모두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루어졌음

- 최초의 계약이전은 2020년에 완료되었는데, 보험그룹 Enstar의 계열사인 Providence Washington Insurance Company와 Yosemite Insurance Company 간에 이루어졌으며, 이전대상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Liabilities)이었음
- 두 번째는 2021년에 완료되었는데, Sentry Insurance Company가 재보험을 National Legacy Insurance Company로 이전하였음
 - National Legacy Insurance Company는 레거시 전문회사(Legacy Specialist)인 Randall & Quilter Investment Holdings의 자회사임
 - 계열 관계가 아닌 법인 간 계약이전으로는 최초의 계약이전임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했음

- 코네티컷, 일리노이, 아이오와, 조지아, 미시간, 콜로라도 6개 주에서는 보험산업에만 적용되는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였음¹⁸⁾
 -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독일도 계약이전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관여 없이 보험감독당국인 BaFin의 인가만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미와 차이를 보임¹⁹⁾

-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도 법원의 관여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나, 보험계약자의 1/10 이상이 계약이전에 반대할 경우 계약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규제당국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포괄이전제도(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은 분리해서 계약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3년에 폐지했음

- 2000년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른 산업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보험산업은 포괄이전제도로 인해 한계가 존재하였음
 - 예를 들어, 동일한 보험상품을 설계사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다가 회사분할을 통해 한 회사는 설계사 채널에 특화하고 다른 회사는 온라인 채널에 특화할 경우, 기존판매 상품을 채널별로 두 회사에 분리해 이전하는 것이 포괄이전제도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음

18)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분할을 회사법적 차원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민법의 계약법 등을 적용하고 있음(노혁준(2013), 『회사분할의 제 문제』, BFL 총서 8, 소화)

19) 독일과 일본사례는 다음 자료를 참고했음; 김석영·이소양(2020),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이슈보고서 2020-6, 보험연구원



4. 시사점

- 보험산업은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Capital Efficiency)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계약이전제도의 경우에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포괄이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²⁰⁾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²¹⁾
 - 일본은 2013년 포괄이전규제를 폐지하였고,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제도에 포괄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
- 둘째,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① 연대책임과 ② 채권자 이익절차 두 가지 수단을 두고 있는데²²⁾,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기업분할 후에도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목적인 법적 책임의 분리를 달성하기 어려움
 - 한편, 채권자 이익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별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처럼 채권자가 많은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20) 보험업법 제140조

21) 이기형·변혜원·정인영(201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12-2, 보험연구원

22) 김건식·노혁준·천경훈(2022), 『회사법』, 제6판, 박영사